

서식 5

입원·격리 통지서
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<개정 2021. 12. 30.>

[] 입원·[] 격리 통지서

성 명			생년월일	
입원·격리 사유				
입원·격리 내용	입원일·격리시행일			
	입원기간·격리기간			
	입원·격리 장소	[] 병원·의원() [] 자택 [] 시설()		
주소				
<p>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.</p> <p>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※ 이 통지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				
<p>질병관리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</p>				<p>직인</p>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